

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工業所有權制度의 紙上分析

- …… 工業所有權制度의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 ……本誌는 「判例研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の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
- ……모아 分析해 보았다. ……<編輯者註>……○

◎ 第 11 回 ◎

權利消滅과 確認審判

消滅된 權利에 對한 權利範圍確認은 利益이 없다

特許權의 權利範圍確認의 審判請求는 現存하는 特許權의 範圍를 確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므로 一旦 適法히 發生한 特許權이라 할지라도 消滅된 以後에는 그 權利에 關하여 權利範圍確認의 審判請求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確認의 利益이 없다.

※ 大法院(第3部) 1970. 3. 10 宣告, 63후 21判決 特許 權利範圍確認, 1968. 5. 9. 1967 抗告審判 第158號 審決)

特許權의 權利範圍確認의 審判請求는 現存하는 特許權의 範圍를 確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므로 一旦 適法히 發生한 特許權이라 할지라도 特許料의 納付懈怠로 因하여 特許權이 消滅되었을 境遇에는 그 消滅된 以後에 있어서는 그 權利에 限하여 權利範圍確認의 審判請求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確認의 利益이 없다 할 것인바 記錄에 依하면 審判請求人은 本件 特許에 對하여 特許料 納付를 懈怠하여 本件 審判請求 以前의 1963. 5. 14자로 特許權이 消滅되었음이 明白하므로 이는 確認의 利益이 없어 棄却을 免치 못할 것이다.

除斥期間

審判繫屬中の 除斥期間 經過와 請求理由의 補充 또는 變更의 適法與否

除斥期間 經過前에 提起된 審判請求의 理由를 審判

繫屬中 除斥期間 經過後에 補充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除斥期間 經過後에 提起된 不適法한 審判請求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大法院(第2部) 1974. 1. 29 宣告, 73후 12判決 (實用新案登錄無效 1973. 4. 16. 1972 抗告審判 第184號 審決)

被審判請求人이 原審에서 이件 無效審判請求는 當時의 實用新案法 第25條(舊法) 所定の 排斥期間을 經過하여 提起한 不適法한 請求라고 主張한 것에 對하여 原審決이 判斷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기는 하나 原審이 認定한 바와 같이 이件 實用新案의 登錄日은 1966. 12. 12이고 審判請求人이 이件 無效審判請求를 提起한 것은 그 登錄日로부터 5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1971. 12. 11일이 記錄에 依하여 明白한 이 事件에 있어서 審判請求人이 이件 無效審判請求書에 請求理由로서 이件 登錄實用新案은 그 登錄 出願前에 國內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것으로부터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만 主張하였다 하여 그 登錄 實用新案에 對한 無效事由의 主張이 없는 不適法한 審判請求라고는 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審判請求人은 審判過程에서 請求의 理由를 補充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所論 除斥期間 經過後인 1972. 1. 20에 이件 請求의 理由를 補充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와 같이 除斥期間 經過前에 提起된 審判請求의 理由를 補充한 것이 될 것이요 除斥期間 經過後에 提起된 不適法한 審判請求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趣旨로 본 1審 審決을 適法하다고 받아 들인 原審決에 影響을 미친

審理判斷의 遺脫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原審決에는 法理誤解의 違法이 없다고 본다.

審判參加人

審判補助參加人의 地位

主된 當事者인 審判請求人이 利害關係를 갖지 않는다는 理由로 그 審判請求가 許容될 수 없는 것인 이상 假使 補助參加人이 그 實에 있어서는 獨立하여 이 事件 意匠의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利害關係를 가진者라 하더라도 그로 因하여는 이 事件 審判請求人의 審判請求를 適法하게 할 수는 없다.

※ 大法院(第1部) 1970. 8. 31 宣告, 69후 13判決(意匠登錄 無效 1969. 2. 17, 1968 抗告審判 第152號 審決)

參加人의 地位

特許法上 參加人으로서 할 수 있는 訴訟行爲의 範圍는 다치 共同訴訟人과 같은 地位에 있다할 것이다.

※ 大法院(第1部) 1973. 10. 23 宣告, 71후 14判決(特許 權利範圍確認 1971. 3. 8. 1970 抗告審判 第163號 審決)

第1次 抗告審判에 關與한 審判官

第1次 抗告審判審判官으로 審決에 關與한 審判官은 다시 原審決(選送事件의 審決)에 關與할 수 없다.

※ 大法院(第1部) 1970. 9. 17 宣告, 68후 28判決(實用新案登錄無效 1968. 7. 5, 1962 抗告審判 第20號 審決)

舊特許法 第164條 第6號(舊舊法) 또는 實用新案法 第20條(舊法)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99條 第6號(舊法)에 의하면 審判官이 事件에 對하여 審査官 審判官 또는 判事로서 査定審決 또는 判決에 關與한 때에는 審判關與로부터 除斥된다고 規定하였는나 除斥原因이 있는 審判官은 除斥申請 또는 除斥審判을 기다릴것 없이 法律上 當然히 그 事件에 關하여 一切의 職務執行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나 審判官 C는 本件 第1次 抗告審判 審判官으로서 審決에 關與하였음에도 不拘하고 다시 原審決에 關與하였음은 違法이라 할 것이고 論旨는 理由있다.

審査에 關與한 抗告審判官의 除斥 與否

原審의 抗告審判에 關與한 審判官 C는 그 前審인 拒絕豫告通知를 하는데 關與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除斥에 該當되지 아니한다. (2點)

※ 大法院 1980. 9. 30 宣告, 78후 3判決(特許出願 査定不服 1978. 1. 19, 1976 抗告審判(질) 第205號 審決)

職權審理의 性格

職務審理는 強行規定

審判에서는 職權審判을 할 수 있으며 그 理由에 對하여 當事者 또는 參加人에게 期間을 指定하여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나 이는 審判의 適正을 期하여 審判制度의 信用을 維持하기 爲하여 確保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公益上의 要求에 起因하는 소위 強行 規定이라고 解釋함이 相當하다.

※ 大法院(第2部) 1970. 11. 24 宣告, 70후 50判決(意匠登錄 無效 1970. 7. 22, 1970 抗告審判 第56號 審決)

立法責任

(가) 號製造方法의 立證責任

審判請求人은 (가)號 說明書의 製造方法을 立證하여야 할 義務가 있다.

※ 大法院(第2部) 1967. 1. 31 宣告, 66후 14判決(特許 權利範圍確認 1966. 9. 30, 1965 抗告審判 第70號 審決)

記錄에 依하여 보면 抗告審判被請求人(審判請求人)은 (가)號 說明書의 製造方法으로 製造된 床材타일이 抗告審判被請求人이 1972. 11. 29 出願하여 1963. 3. 25 特許된 第1125의 權利範圍에 屬한다는 審判을 請求하였음이 分明하므로 抗告審判被請求人으로서는 (가)號 說明書의 製造方法에 依하여 製造된 床材타일(實物)이 抗告審判請求人이 製造하는 것이라는 것과 審判過程에서 製造하는 方法과 抗告審判過程에서 製造하는 方法이 서로 달라서 原審이 檢證할 當時에는 製造方法을 달리하고 있다는 事實을 主張 立證하여야 할 義務가 있다고 할 것이니 만큼 原審이 檢證의 結果에 依하여 抗告審判請求人은 (가)號 說明書의 製造方法으로 床材타일을 製造하는 것이 아니고 全然 다른 方法에 依하여 製造되는 事實을 認定하고 第1125號 特許의 權利範圍에 屬하지 않는다고 判示한 것은 正當하고 아무런 違法이 없다.

職權에 의한 證據調查의 程度와 立證責任

審判에서 職權으로 證據調查를 할 수 있다는 것은 審判의 必要에 따라 當事者間의 申請이 없어도 職權으로 證據調查를 할 수 있음을 規定한 것 뿐이고 모든 境遇에 반드시 職權에 依하여 證據調查를 하여야 한다는 趣旨는 아니므로 審判制度가 職權審理主義를 採擇하고 있다는 理由로 그 立證責任을 轉嫁할 수는 없다.

※ 大法院(第2部) 1974. 5. 28 宣告, 73후 30判決(登錄意匠權利範圍確認 1973. 6. 14, 1972 抗告審判 第417號 審決) <계속>